

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현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6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1일

발 의 자 : 이현찬, 경만선, 김소양,
김용석, 김재형, 김정태,
김정환, 김희걸, 이상훈,
이세열, 이영실, 임종국,
채유미, 최기찬, 최정순,
한기영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과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상위법령인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입안취지에 맞춰 빅데이터등의 수집·활용에 관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, 각각의 법률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본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사항 반영
 - － “데이터기반행정”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(안 제2조)
 - － “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” 지정(안 제6조 제2항)
 - －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“빅데이터의 시행계획” 수립·시행
- 나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개정사항 반영 (안 제2조)

다.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, 자구보완 등을 통해 입안 기준 확보 (안 제1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,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,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조례는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호”를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”을 “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공공데이터법’이라 한다)”로 하며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데이터기반행정”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·저장·가공·분석·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법 제28조제1항”을 “「공공데이터법」 제28조제1항”으로 하고, 제3호 중 “법 제17조제1항”을 “「공공데이터법」 제17조제1항”으로,

“법 제28조제1항”을 “「공공데이터법」 제2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법 제12조”를 “「공공데이터법」 제12조”로, “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”을 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데이터기반행정법’이라 한다)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중 “법 제8조”를 “「공공데이터법」 제8조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법 제7조제4항”을 “「공공데이터법」 제7조제4항”으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매년 「데이터기반행정법」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8조 및 빅데이터등과”를 “「공공데이터법」 제8조 및 「데이터기반행정법」 제7조와”로 하며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제10조제3호 중 “법 제27조제3항”을 “「공공데이터법」 제27조제3항”으로 하고, 제4호 중 “법 제28조”를 “「공공데이터법」 제2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,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 <u>조례는 「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(생 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</u>	나. <u>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호</u> ----- -----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
라. 그 밖에 <u>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</u>	라. ----- <u>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공공데이터법’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“데이터기반행정”이란 공공

제4조(기본원칙) (생략)

1. (생략)
2.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.
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(생략)

-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며, 법 제12조

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·저장·가공·분석·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.

제4조(기본원칙)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 「공공데이터법」 제28조제1항 -----

-----.
3. -----
----- 「공공데이터법」 제17조제1항 ----- 「공공데이터법」 제28조제1항 -----

-----.

제6조(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-----
----- 「공공데이터

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.

③ (생략)

제7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매년 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“공공데이터 시행계획”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을 고려한다.

② 시장은 매년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서울시에 ‘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법」 제12조 -----

---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데이터기반행정법’이라 한다)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---

----- 「공공데이터법」 제8조

-----.

--- 「공공데이터법」 제7조제4항-----

-----.

② 시장은 매년 「데이터기반행정법」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

---- 「공공데이터법」 제8조
및 「데이터기반행정법」 제7조와 -----

② ~ ③ (생략)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<u>위원</u> <u>중에서 호선</u>한다. ⑤ ~ ⑥ (생략) 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(생략) 1. 2. (생략) 3. <u>법 제27조제3항</u>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. <u>법 제28조</u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 공 중단, 중단사유 해소 및 조 치사항 5. 6. (생략)	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u>위촉한 위원</u> <u>중에서 호선(互選)</u>한다. 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 1. 2. (현행과 같음) 3. 「<u>공공데이터법</u>」 제27조제3 <u>항</u>----- ----- 4. 「<u>공공데이터법</u>」 제28조 -- ----- ----- ----- 5. 6. (현행과 같음)
--	--